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 기관
1	관세 (기업회계)	관세주사보(7급)	1명	인천세관
			1명	서울세관

○ 근무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중복 지원 불가)

2 담당예정 직무

연번	임용분야	채용직급	주요업무
1	관세 (기업회계)	관세주사보(7급)	·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 · 세무· 회계 자문 업무 등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채용자격 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자격
관세 (기업회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연구 경력 또는 공무원 경력을 포함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불인정
 - *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은 근무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함

5 신분 및 보수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적용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7.10(월) ~ 7.21(금)	'17.7.17(월) ~ 7.21(금)	'17.7.28(금)	'17.8.3(목)	'17.8.10(목)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채용 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7. 17(월) ~ 7. 21(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706호 (우 302-701)	042-481-7707, 7673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관세청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우리 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여권사진 (3.5cm×4.5cm) 2매를 부착하고 7,000원 상당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

10 유의사항

- 응시자는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인천세관 또는 서울세관에 임용될 예정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기관 :]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응시기관 :]

※응시번호		응 시 표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관세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① 응시기관 : 반드시 하나만 기재함(중복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
- ②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③ 응시직급 : 관세주사보
- ④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복수국적 : 예, 아니오의 ()에 ○표시
- ⑦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 상반신 · 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사진부착 금지)
- ⑧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7,000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 6~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 내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렬 및 직급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 자기 소개	
2017. . . 작 성 자 : (인/서명)	

【작성요령】

- ①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직렬	
생년월일	19	응시직급	

2017. . . . 작성자 : (인/서명)

【작성요령】

-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추진실적 등 작성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2017년도 제1회 관세청 국가공무원(관세주사보)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관세청 인사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관세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2017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 | | | |
|----------|------|-----------|---|
| ▪ 성 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 e-mail | | | |
| ▪ 직 장 | | ▪ 직 위 | |
| ▪ 직장전화 | | ▪ 연락가능 팩스 | |

관세청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조회
-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 재직 및 경력관련 자료
- 기타 임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